

의안번호	2213478
의 퇴 인	김태선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B5513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함(제2항) 4. <u>제52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기준(업종·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2	안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	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(업종·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(제5항 신설)	의무규정
3	안 제84조(안전인증)	<u>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음. 다만,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특성,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여야 함(제3항)</u>	재량·의무 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—	• 미대상 －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)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 －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에 '안 제52조제5항²⁾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기준(업종·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)에 관한 사항'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(업종·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)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84조(안전인증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본문 참조

1)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
2.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3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) 안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(업종·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⁾
 -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 사업⁴⁾을 추진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은 위험기계·기구, 방호장치·보호구, 산업용기계·기구 등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 기준 52억 7,700만원이 편성됨⁵⁾
-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안전인증 규정에 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 특성,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또한,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인증을 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안전인증 물량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안전인증 신청 물량 증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
3) 제84조(안전인증)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.

4)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업(코드: 4152-351)의 내역사업

5) 고용노동부, 「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5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